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Subject: News Flash of MEPC 77

제7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이하 “MEPC 77차”라 한다)가 화상회의를 통하여 2021년 11월 22일에서 26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MEPC 77차의 주요 논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 1.1 평형수 처리장치 IMO 기본승인 1건
- RADClean® BWMS (Islamic Republic of Iran)
- 1.2 평형수 처리장치 IMO 최종승인 2건
- JFE BallastAce® that makes use of NEO-CHLOR MARINE® (Japan)
- HiBallast NF™ BWMS (Republic of Korea)
- 1.3 평형수 처리장치 최종승인 불허 1건
- FlowSafe BWMS (Cyprus)
- 1.4 MEPC 77차에 보고된 정부형식승인 완료된 평형수 처리장치 (총 8건)
- SeaCURE® BWMS (Liberia), MICROFADE II BWMS (Netherlands), CompactClean BWMS (Denmark), Purestream™ BWMS (Norway), Electro-Cleen™ System BWMS (Republic of Korea), Purimar™ BWMS (Republic of Korea), EcoGuardian™ BWMS (Republic of Korea), NiBallast™ BWMS (China), they were typ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BWMS Code adopted by resolution MEPC.300(72). 동 형식승인은 BWMS의 형식승인을 위한 BWMS Code (Res.MEPC.300(72))에 따라 승인받음.
- 1.5 수질 약조건의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BWM 협약의 적용에 관한 지침
- MEPC 71차는 평형수 주입에 대한 BWMS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항만지역(예: BWMS의 운전 제약사항을 초과하는 탁도, 총 부유물질 및/또는 염도)에서의 선내 비상조치방안의 하나로서 평형수 교환(BWE)과 BWMS에 의한 평형수 관리(BWT)의 병행에 관한 지침서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PPR 5차로 동 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지시하였음.
- PPR 5차 논의 중, 제안된 방법이 비상조치의 정의와 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수질문제로 평형수가 주입되지 않아야 할 해역의 지정 또는 약조건의 수질을 가진 항만지역의 식별 및/또는 항만이 제공하는 경우 양호한 수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식별하기 위한 협약당사국들 사이에서의 상호 합의 등에 관한 불균형적인 행정 및 금전적 부담에 관한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우려가 제기되었음.

- MEPC 77차는 다음의 주요한 요소를 제공하는 수질 약조건의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BWM 협약의 적용지침으로 제시된 다양한 제안사항들과 의견들을 고려하였음:

.1 BWMS의 운전제약 조건을 초과하는 고 탁도/부유물질 또는 저염도의 항만지역에 입항하는 경우, BWMS를 우회하여 평형수를 주입하고 BWMS를 통하여 처리된 물로 평형수를 교환할 수 있는 해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평형수의 주입 및 평형수 교환과 처리를 병행한 사실이 평형수 기록부에 적절히 기재되어야 한다;

.2 평형수 교환지역은 최소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200해리 및 수심 200미터 지역의 공해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불가능할 경우 항만국에 의하여 평형수 교환가능지역이 지정된 곳이거나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50해리 및 수심 200미터 지역이 될 수 있다.

- MEPC 77차는 평형수 교환과 처리의 병행에 따른 규정적, 기술적 및 안전에 관한 영향 측면으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로 인하여 제안된 지침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반면, MEPC 78차에서의 지침 완성을 목표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총 부유물질 및 탁도로 인하여 장비의 조작이 불가능한 수질에 관한 상황의 식별, BWM.2/Circ.62에 제시된 비상조치 방안들과 유사한 접근 및 평형수교환과 처리의 병행이 요구되는 경우 주관청 및/또는 항만당국과의 협의)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냄.

1.6 BWM 협약의 E-1.1.1 및 1.1.5규칙의 통일해석

- MEPC 75차는 BWMS의 커미셔닝 테스트에 관한 강제규정을 제공하는 BWM 협약의 E-1 규칙 개정안을 Res.MEPC.325(75)로 채택하였으며, 동 커미셔닝 테스트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BWM.2/Circ.70/Rev.1로 승인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은 2022년 6월 1일 발효될 예정인 반면, 개별 BWMS의 커미셔닝 테스트의 강제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강제 커미셔닝 테스트가 "실제 검사완료일", "건조일(Keel Laying)", "검사 신청서 접수일" 또는 "커미셔닝 테스트 시작일"의 기준과 같이 강제로 수행되어야 하는 시점에 대한 산업계의 다양한 질문을 고려하여, MEPC 77차는 BWM.2/Circ.70/Rev.1에 따라 생물학적 시험을 수반한 커미셔닝 테스트를 위한 최초 또는 추가검사가 2022년 6월 1일 이후에 완료되는 시점부터 강제로 적용됨을 언급하는 통일해석을 BWM.2/Circ.76로 승인하였음.

1.7 경험축적기(Experience Building Phase: EBP)

- 과거의 G8 지침서에 따라 승인받은 BWMS를 탑재한 선주와 선원의 조절능력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장비효율의 결여로 인하여 선박 또는 장비의 일생동안 BWMS의 교체를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는 비처벌 조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난 MEPC 71는 경험축적기(Experience Building Phase)의 기본구조를 언급하는 결의서 Res.MEPC.291(71)을 채택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하였음. 이에 추가하여 MEPC 72차는 경험축적기의 이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계획에 관한 BWM.2/Circ.67을 승인하였고, MEPC 74차는 이의 개정안을 BWM.2/Circ.67/Rev.1으로 승인하였음.

- 경험축적기에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협약 검토의 3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협약의 발효 시점 경험축적기는 함께 시작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선별된 개정안의 발효시점에 종료될 예정임. BWM.2/Circ.67/Rev.1에 언급된 경험축적기의 일정에 따라, 3년동안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보고서 초안이 완료되어야 했음. 경험축적기 기간동안 일부 당사국들로부터 정보가 수집되었고, 단 매우 제한적인 숫자의 선박들에 대한 정보가 4개 회원국만을 통하여 현재까지 IMO로 제공되었음이 제시됨.

- 대략 15,000여척의 선박들에 대한 정보가 현 시점까지 수집되었고 MEPC 78차로 이의 최종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가 분석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MEPC 77차는 당회 회기로 제출된 제안사항들을 비롯하여 향후 사무국으로부터 제출될 최종보고서에 대한 고려를 차기 MEPC 78차로 연기하였음.

1.8 특정선종에 대한 BWM 협약의 적용

- MEPC 74차는, 길이 50미터 이상의 해난구조용 선박이 A-5규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 BWMS를 소급 설치할 공간의 부족한 선박 및 정상 항해 중 평형수 및 화물작업이 없는 선박 등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하여, A-5규칙(동등 적용 요건)이 다목적 해난구조용 선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의 적용을 확대시키는 BWM 협약의 개정안 및 해난구조용 예인선에 대한 협약 면제에 관한 제안사항들을 고려하였음. 논의 후, 위원회는 BWM.2/Circ.44 (BWM 협약에 따른 Offshore Support Vessels에 대한 평형수관리를 위한 선택사항)와 같은 현존 지침서가 동 사항을 함께 언급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고, 동 건에 관한 추가제안을 향후 회기로 제출하여 줄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하였음.

- 상기 사항들을 언급하기 위한 모든 선박들 대상의 BWM 협약의 준수를 위한 선택사항 관련 지침서 초안이 MEPC 75차로 제출되었으나, 향후 회기로 이의 검토가 연기되었음.

- 동 건에 관련된 주요 회원국들의 협의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MEPC 77차는 동 건에 관한 논의를 다음 차수로 연기함과 동시에 관심있는 당사국들에게 최신화된 제안사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이의 제안을 차기 MEPC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2. 대기오염 및 선박에너지 효율규정

2.1 배기가스 세정장치에 관한 2021 지침서 (2021 Guidelines for EGCS)

- MEPC 77차는 PPR 7차에서 개발된 배기가스 세정장치에 관한 2021 지침서 초안을 다음의 주요사항 및 지침서의 추가 보완을 위한 제안사항들과 함께 고려하였음: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1 페난트렌을 포함하여, PAH(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혼합물의 16가지 PAHs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파장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페난트렌 동등물"의 정의 개정 제안;

.2 ISO 7027 기준에 맞추기 위한 탁도 측정장비의 요건 개정 제안;

.3 개정 지침서의 채택 후, 이의 적용까지 12개월의 유예기간 제안. 개정 지침서의 적용 날짜 이후에 선박으로 장비가 인도될 것으로 계약된 경우 및 2015 지침서에 따라 설계된 EGCS 가 이미 승인 과정에 있을 수 있다는 다수의 관련 사례들로 인하여 현 지침서 초안에 언급된 6개월의 유예기간은 충분치 않을 수 있음;

.4 "2018 Guidelines for the discharge of exhaust gas recirculation (EGR) bleed-off water"에 관한 Res.MEPC.307(73)의 10.1.6.1항과 맞추기 위한 개정 제안. 이는 수산화나트륨(NaOH)과 같은 중화제가 첨가제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배출수의 pH가 8.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승인된 유수분리장비(oily-water separating equipment)에 응집제가 사용되는 경우에 배출수의 추가적인 평가를 제외시키기 위함임; 및

.5 페난트렌 동등물을 사용하여 선내에서 측정된 PAHs의 응집도가 EPA16 PAHs를 활용하여 분석한 값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EGCS 배출수에 대한 연구결과 - 논의 후, MEPC 77차는 "2021 Guidelines for the Exhaust Gas Cleaning Systems"에 관한 Res.MEPC.340(77)을 다음의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채택하였음:

1. 적용 날짜의 명확화 (2021 지침서는 적용일 이후 용골이 거치된 날, 또는 적용일 전에 용골이 거치된 경우 적용일 이후의 EGCS 계약상 납기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2. 신규로 제안된 12개월의 적용상 유예기간 대신, 최초 제안된 지침서의 채택 후 6개월의 적용상 유예기간이 합의되었음;

3. 허용 가능한 범위에 해당되는 파장을 반영하기 위한 "페난트렌 동등물"의 정의에 관한 명확화 (244-264 nm 여기파장(Excitation) 및 310-410 nm 방출파장(Detection));

4. ISO 7027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탁도 모니터링 장비 요건의 명확화 (탁도계는 탁도가 안정적으로 수치화 될 수 없는 경우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5. 지침서의 4.2.2.4항과 5.6.3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ETM-A(EGCS Technical Manual Scheme A) 및 ETM-B의 개정이 지침서의 적용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현존 EGCS 장비에도 2021 지침서가 적용됨; 및

.6 수산화나트륨(NaOH)과 같은 중화제가 첨가제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배출수의 pH가 8.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승인된 유수분리장비(oily-water separating equipment)에 사용되는 응집제가 활용되는 경우에 배출수의 추가적인 평가를 제외시키기 위한 지침서의 10.1.6.1의 명확화

2.2 조건과 지역을 포함한 해양환경에 대한 EGCS 배출수의 규칙과 지침의 평가 및 조화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 EGCS 배출수는 기관의 배기가스로부터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기타 혼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포함하며, 선외로 배출되는 이의 혼합물은 해양환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많은 국가들이 자국법을 통하여 그들의 영해 및 항만지역내에서의 개방형(Open-loop) EGCS의 세정수 배출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해양환경으로 의도치 않은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민감해역(PSSAs) 및 특별해역에서의 EGCS 배출수 금지, 혼합물 배출에 관한 보다 강화된 제한 및 EGCS 배출수 인자들의 모니터링과 보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제안과 견해들이 있어왔음.

-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계 및 국가들에 대한 환경 및 경제적 영향을 다루기 위한 일관되고 명백한 규정적 조치들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PPR 7차는 "유해성 및 영향평가", "EGCS 잔류물의 양륙", "규정 체계" 및 "물질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4가지 파트를 구성하는 작업 범위의 체계에 동의하였으며, 작업 제목을 *"Evaluation and harmonization of rules and guidance on the discharge of discharge water from EGCS into the aquatic environment, including conditions and areas"*로 개정함에 추가로 동의하였음.

- EGCS 배출수에 관련된 일부 연구사항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음:

1. 개방형 EGCS에서 발생한 배출수는 폐쇄형 장비에 비하여 훨씬 더 해양환경으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실제 샘플 분석에 근거한 연구;

2. 대양에서 해양생물로의 단기간 노출은 이의 영향성이 미미하므로 배출수의 환경적 영향은 지역적 조건에 의존한다는 연구. 단, 선박 통항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허용 가능한 응집도 수준이 초과할 수도 있음; 및

3. 그러한 배출수의 해양생물에 관한 유해성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연구.

- 장시간의 격렬한 논의 후, 제안사항들의 추가 검토를 위한 GESAMP의 재설립은 시간 부족 및 작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함을 특히 고려하여, MEPC 77차는 개정된 작업 제목 및 작업 범위를 2022년의 완료로 목표로 *"Evaluation and harmonization of rules and guidance on the discharge of discharge water from EGCS into the aquatic environment, including conditions and areas"*로 승인하였음. 이에 추가하여, 위원회는 GESAMP에게 제안사항들을 검토하고 이의 조언 또는 권고사항을 PPR 전문위원회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2.3 단일 모니터링 장비의 고장 시 요건 준수의 식별 및 배기가스 세정장치가 지침서의 관련 요건들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수행되어야 할 권고사항에 관한 지침 (MEPC.1/Circ.883)

- MEPC 74차는 *"Guidance on indication of ongoing compliance in the case of the failure of a single monitoring instrument, and recommended actions to take if the Exhaust Gas Cleaning System (EGCS) fails to meet the provisions of the 2015 EGCS Guidelines (Res.MEPC.259(68))"*를 MEPC.1/Circ.883으로 승인하였음.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 PPR 7차는 동 지침의 적용가능성을 향후 개발될 모든 EGCS 지침서로 확대시키는 MEPC.1/Circ.883의 개정안을 개발하였으며, 동 회기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였음.
- MEPC 77차는 동 지침의 개정을 위한 다수의 제안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음:
 - .1 1시간 이상의 EGCS 장비의 고장 시, 특정 상황하에서(시차 문제로 인한 주관청과의 연락두절 또는 기타 기술적 사항들로 인하여 적합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유 사용이 잠정적으로 허용되어야 함;
 - .2 부적합유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허용될 수 없으며, Scheme B로 승인받은 장비의 1시간 이상의 고장 시 즉시 적합유로의 전환이 수행되어야 함; 및
 - .3 장비 고장 시의 관련 당사국 또는 주관청과의 협의 및 조치사항에 대한 결정은 선박의 운항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빨리 수행되어야 함.
- 논의 후, MEPC 77차는 EGCS 고장에 따라 부적합 조건에서 선박의 운항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 항만당국과의 의사소통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추가의 명확화를 비롯하여 지침서의 일부 개정사항들과 함께 동 지침의 개정안을 MEPC.1/Circ.883/Rev.1으로 승인하였음.

2.4 Attained EEDI의 계산 및 검증을 위한 혁신적 에너지효율 기술의 취급을 위한 2013 지침 (MEPC.1/Circ.815)

- MEPC 65차는 풍력보조추진시스템(Wind Assisted Propulsion System, WAPS) 등과 같은 혁신기술의 효과를 EEDI 규정체계로 반영하기 위하여 "2013 Guidance on treatment of innovative energy efficiency technologies for calcul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attained EEDI"를 MEPC.1/Circ.815로 승인하였음. 동 지침은 풍력보조추진시스템에 적용되는 반면, 동 시스템의 효과를 얻기 위한 전반적인 바람확률 매트릭스 및 성능시험에 관한 기술지침이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음.
- MEPC 77차는 동 지침 최신화를 위한 다수의 제안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음:
 - .1 동 지침의 적용가능성을 EEXI 규정체계로도 확장;
 - .2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풍향조건을 고려하기 위한 계산절차, 풍향 및 항로최적화를 고려하기 위한 선박의 다양한 운항적 특성, 및 풍력보조추진시스템을 장착한 선박들에 대한 EEDI 계산으로 실제의 연료절감량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최신화;
 - .3 대체방법으로서 풍력 매트릭스 결정을 위한 산술계산식을 포함하여, 이의 관련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한 모델시험 성능에 대한 지침;
 - .4 풍력보조추진시스템이 설치된 선체 상부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 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일부 시스템(특히, 회전 돛)에서 요구되는 단일의 풍력추진 유닛에 대한 레이놀드 수 (Reynolds numbers)를 활용한 성능시험 수행; 및
 - .5 적용된 사례가 기술적으로 합리적인지 즉, 현실적인 사례만이 포함되는지 및, 예를 들어, 허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Heel Force(풍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횡 경사 등)는 무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시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필요성

- 논의 후, MEPC 77차는 실제 연비절감 측면에서 보다 더 선호되는 바람 확률 매트릭스 내 상위 1/2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옵션과 함께, "2021 Guidance on treatment of innovative energy efficiency technologies for calcul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attained EEDI and EEXI"을 제공하는 MEPC.1/Circ.896을 승인하였음.
- 동 최신화 된 지침서는 MEPC.1/Circ.815를 철회하며, 추후 이의 적용에 따른 경험을 고려하여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검토함에 합의하였음.

- 2.5 MARPOL Annex VI의 18규칙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연료유 공급서(BDN)에 강제 요건으로 제시되어야 할 인화점(flashpoint)의 추가
- MEPC 77차는 연료유의 이용가능성 및 이용 불가능성에 관한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보고를 위한 GISIS의 개선된 모듈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을 승인하였음.
 - 현 시점 해사안전위원회(MSC)가 연료유의 인화점에 관련된 다수의 지침서 초안을 개발 중이고 동 건을 다루기 위하여 통신작업반이 MSC 103차에서 개설되었음을 고려하여, MEPC 77차는 연료유 공급서 상으로 연료유의 인화점을 추가하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해사안전위원회가 동 작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함.

3.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 3.1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9차 회기간 작업반 (ISWG-GHG 9) 결과
- 모든 종류의 연료에 대한 전주기 온실가스/탄소 집약도(life cycle GHG/Carbon intensity) 지침서 및 메탄슬립(Methane Slip)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저감조치를 개발하기 위한 ISWG-GHG 9차 회의가 화상회의를 통하여 2021년 9월 15~17일 까지 개최되었음.
 - 작업반은 시간부족 및 논의의 최초단계라는 점으로 인하여 제안사항들과 제기된 의견들을 전부 다 고려할 수는 없었던 반면, 전주기 지침서 및 메탄슬립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의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음:
 - 1 지침서의 범위는 선박의 운항 및 추진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연료에 관련된 **Well-to-Tank(WtT)**¹ 및 **Tank-to-Propeller(TtP)**²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함. 기타 단명(short-lived)의 기후변화 물질, 예를 들어, 비메탄 휘발성유기화합물(Non-Methane VOCs), 질소산화물,

¹ **Well-To-Tank** 배출계수는 "Upstream" 또는 간접적 배출로 알려져 있으며, 연료 또는 에너지 매개체의 생산, 공정 및 운송 등의 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의 평균을 의미한다.

² **Tank-To-Wake(Propeller)** 배출계수는 "Downstream" 또는 직접 배출로 알려져 있으며, 선박을 운용하기 위한 연료소모로부터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의 평균을 의미한다.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미립자 및 블랙카본은 동 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하지만, 향후 논의에 따라, 블랙카본 및 기타 단명의 기후변화 물질의 추가 또한 고려될 수 있음;

.2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및 아산화질소(N₂O)를 포함함. Tank-to-Propeller 배출에 있어서, 이산화탄소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물은 기관의 세대, 종류 및 사용되는 연료에 의존함;

.3 기본적으로 100년 주기의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₁₀₀)를 사용하여 GHG 배출량을 CO₂-동등물(CO_{2eq})로 계산하며, 20년 주기의 지구온난화지수(GWP₂₀)는 비교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4 주된 "연료 라벨"은 "화석연료(Fossil)", "바이오매스(Biomass) 연료", "탄소포집(Carbon Captured)" 및 "무탄소와 전기"로 식별되며, 이는 탄소의 근원 및 기타 지속가능성 측면과 각기 다른 에너지 이동원의 하위 범주를 포함하는 개별 연료에 근거함;

.5 연료에 대한 IMO 전주기 온실가스/탄소 집약도 지침서의 Well-to-Tank(WtT)에 관한 고정값의 반영 및 이의 평가는 과학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전문가 그룹에서 수행되어야 함;

.6 메탄 배출은 이의 영향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EEDI 감축률 4단계 개발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는 의견들을 고려하여, 메탄슬립은 연료의 전주기 지침서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함; 및

.7 VOC 배출의 감소가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IMO 초기전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함. 또한, 만약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탱커선의 현행 기준인 0.14bar에서 0.2bar로 P/V valve의 압력설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규제조치들의 비용효과를 고려한 현행 규정체계(MARPOL Annex VI의 15규칙)의 개선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상기의 원칙과 견해들을 고려하여, 작업반은 전주기 지침서의 초안을 2022년 3월에 있을 11차 회기간 작업반에서의 추가 검토 및 고려를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VOC 관련 조치들이 어떻게 추가로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PPR 전문위원회로 지시하여 줄 것을 위원회로 요청함.

3.2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0차 회기간 작업반 (ISWG-GHG 10) 결과

- 탄소집약도 저감(attained CII값 계산에 관련된 보정계수 및 항차조정)에 관한 통신작업반 잠정보고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조치, 단기조치에 대한 영향평가를 지속하는 방법 및 단기조치의 종합영향평가로부터 얻은 교훈을 습득(Lesson-learned exercise)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ISWG-GHG 10차 회의가 화상회의를 통하여 2021년 10월 18~22일 까지 개최되었음.

- 탄소집약도 저감(attained CII값 계산에 관련된 보정계수 및 항차조정)에 관한 통신작업반 잠정보고서를 고려함에 있어서, 작업반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였음:

- .1 시험 목적의 CII를 계산하기 위하여 G1 지침서(Res.MEPC.336(76))의 Section 5에 언급된 자발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또한 강제 데이터에 해당되는 동일한 절차로 검증되어야 함;
 - .2 연간 운항적 CII값, 보정계수, 항차조정을 계산하기 위한 인자들 및 기타 시험 목적의 CII값들은 IMO DCS Database로 보고되어야 함. 하지만 MARPOL Annex VI는 CII에 관련된 이러한 데이터들이 IMO DCS Database로 보고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3 특정선종의 보정계수, CII 계산에 관련된 운항특성 및/또는 항차는 추후 개발될 새로운 지침서(G5 guidelines)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G5 지침서에 따라 보정된 CII 값은 attained CII 및 G4 지침서에 정의된 바에 따라 선박의 CII 등급을 계산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함. 단, 보정되지 않은 기존의 CII값 또한 주관청으로 보고되어야 함;
 - .4 G5 지침서에 언급될 보정계수 및 항차조정사항들은 G1 지침서에 따라 CII 값의 계산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G2 지침서에 언급된 CII 기준선 값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함; 및
 - .5 CII 관련사항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최신화된 SEEMP 지침서 초안을 비롯하여 단기조치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침서들은 2022년 11월 1일에 MARPOL Annex VI 개정안의 발효 전인 MEPC 78차에서 완료되어야 함.
- 작업반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된 중장기조치들에 대하여 고려하였으며, 2022년 5월에 개최될 12차 회기간 작업반에서 이의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함:
- .1 규정 체계에 관한 3가지 가능한 컨셉 제안: IMO 초기전략의 전반적인 의욕수준 달성을 위한 연료유 CO₂/GHG 제한;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집약도지수 교환거래/선대평균;
 - .2 초기전략의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향후의 회의진행 방식으로서,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Standing Technical Group의 설립;
 - .3 5년 주기의 검토과정을 조건으로 국제해운의 신속한 연료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글로벌 GHG 부과금(톤당 100USD) 제안;
 - .4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화석연료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GHG 부과금, 톤당 250~400 USD); 배출권거래제; 및 저탄소 연료기준 도입 제안;
 - .6 선박에서 배출되는 CO₂ 배출 톤당 IMO Climate Fund로의 기여금에 근거한 탄소세기반의 시장기반조치가 어떻게 MARPOL Annex VI의 새로운 Chapter를 채택하여 신속하게 발효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규정 체계의 제안;
 - .7 온실가스 저감 연료 기준; 및
 - .8 연료의 GHG 집약도 제한 및 탄소세거래방식의 조합
- 작업반은 단기조치의 영향에 관한 검토를 어떻게 지속하고, 단기조치의 종합영향평가에 따른 교훈을 어떻게 습득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려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함:
- .1 선박 및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및 전망을 비롯하여 영향평가 절차(MEPC.1/Circ.885)를 개선할 목적으로 1회 또는 그 이상의 Ad-hoc 전문가 워크숍을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개최하기로 합의함;

.2 교훈 습득의 수행은 중장기조치에 관련된 온실가스의 추가감축을 위한 1단계 고려와 병행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초기영향평가에 관한 MEPC.1/Circ.885에 언급된 절차는 중장기조치의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의 1단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

.3 진행과정의 개선영역은 영향평가를 위한 World Bank와 같은 관련 조직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역할 및 기능, 및 종합영향평가를 위한 UNCTAD의 참여를 포함함.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추가하여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또한 수행하는 것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함에 동의함.

3.3 IMO 온실가스 초기전략 및 2050년 의욕 수준(level of ambition)의 개정

- MEPC 77차는 다음과 같은 IMO 초기전략 및 2050년 의욕 수준의 개정에 관한 제안 및 정보들을 고려하였음:

.1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저감에 관련된 현행 MARPOL Annex VI의 규정만으로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른 온도상승 억제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해운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이 2050년까지 탈탄소화 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결의서 초안이 제안됨;

.2 2030년 및 2050년에 대한 의욕수준 강화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IMO 초기전략의 개정이 MEPC 77차에서 시작되고 MEPC 80차에서 개정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전 위원회에서 합의하였음을 상기하여, 탈탄소달성을 위한 새로운 2040년 의욕수준 도입이 제안되었음;

.3 IMO 초기전략 강화를 지지함에 있어서, 기술협력 및 금융지원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군소도서국(SIDS)과 최빈개도국(LDCs)이 겪는 제약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4 2050년까지 총 연간 CO₂ 배출량의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탄소 기술력의 R&D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IMRB/F(국제해사연구이사회 및 기금)에 관련된 제안사항들이 승인되어야 함; 및

.5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업무 및 특정 산업계 연합단체 의한 최근의 소식들을 비롯하여 탈탄소 연료/해운분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투자와 행동에 관한 정보들이 제시되었음.

- 논의 중, MEPC 77차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IMO 초기전략의 의욕수준을 현재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저감 대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 26차에서 합의된 **Glasgow Climate Pact**³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상응하는 탈탄소(zero GHG emissions)로 최신화되어야 함을 언급하도록 제안된 결의서 초안을 특히

³ **Glasgow Climate Pact**는 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조약으로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기금의 확대를 비롯하여 석탄 사용의 점진적 중지를 계획하는 첫번째 기후 조약. COP 26 회기 중, 2050년의 해운분야를 "Net-zero emission"으로 이끌 수 있는 일부 선언 및 서약들(Clydebank declaration, Declaration on zero emission shipping by 2050, CVF Dhaka-Glasgow declaration, 등)이 제시됨.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고려하였음. 동 건에 대한 상당한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안된 결의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반면, IMO 초기전략의 검토 및 최신화를 포함하여 이의 목표, 영향평가 및 연료유 이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동의하였음.

- 이와 같은 측면에서, MEPC 77차는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IMO 초기전략 개정을 이의 Follow-up action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착수할 것에 동의하였으며, 개정 전략의 채택을 조건으로 2023년 봄에 개최될 MEPC 80차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에 추가로 동의하였음.

3.4 국제해사연구이사회 (International Maritime Research and Development Board, IMRB)

- MEPC 75차는 자금, 관리감독 및 각종 R&D 프로젝트의 조정을 담당하는 비정부 국제해사연구이사회(IMRB) 및 연료유 톤당 2 USD의 강제 R&D 기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지속 기간인 10~15년 동안에 걸쳐 총 50억 USD가 모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해사연구기금(IMRF)의 설립사항을 포함하여, 저탄소/무탄소 연료 및 기술도입의 가속화를 위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제안을 고려하였음을 상기하여, MEPC 76차는 IMRB 및 이의 Fund에 대한 최신화된 제안(MARPOL Annex VI 개정안과 종합영향평가 및 MEPC 75차 당시 일부 회원국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우려 및 제안들을 위한 사항)을 고려하였음.

- 하지만, MEPC 76차는 탄소기반의 연료유 톤당 CO₂ 배출톤에 해당하는 탄소세 체계가 차별적 공동책임과 각자의 능력(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CBDR-RC) 원칙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제안된 IMRB/F는 대체연료, 연료생산 및 벙커링 인프라구축 또는 적용에 대한 고려없이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설계되어 있다는 우려들을 고려하였음.

- MEPC 77차는 IMRB/F에 관한 논의를 다음의 최신화된 제안사항들과 함께 지속하였음:

.1 제안된 IMRF의 설립이 최소한의 행정상 부담을 지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의도된, 자동화된 IMRF R&D 기여시스템의 프로토타입 개발에 관한 정보;

.2 현행 IMO 2050년 의욕수준 달성에 요구되는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s) 증대를 위해 요구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비롯하여, 제안된 IMRB의 설립 및 IMRB가 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한 탈탄소 기술력의 연구개발 가속화에 대한 필요성; 및

.3 모든 프로젝트 파트너, 이해관계자, 회원국, 해운산업 및 타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간 이득을 위한 공정하고 동등한 접근 보장에 대하여, IMRB 프로젝트를 통하여 발생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사항들.

- 논의 중, MEPC 77차는 기술이전, 기금의 재분배, 관리방식 및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동등한 접근 등의 기금 및 정보공유 측면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우려들에 대하여 특히 주목하였음.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 이와 관련하여, IMRB 및 이의 기금설립에 대한 당사국들의 지지를 고려하여, MEPC 77 차는 동 안건을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중장기 조치의 1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중기 조치 (mid-term measures)의 일부로 분류하고, 중기 조치에 관련된 제안사항 논의의 한 부분으로서 ISWG-GHG 12차 회기에서 추가로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동의하였음.

3.5 IMO 데이터수집시스템(IMO DCS)의 개정

- IMO 선박연료소모량 데이터베이스로 제출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Res.MEPC.328(76)으로 채택된 MARPOL Annex VI의 개정안은 운항적 탄소집약도(CII) 및 이에 관련된 수치들 또한 IMO DCS 데이터베이스로 보고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규정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 또한 고려하여, MEPC 77차는 현행 데이터 보고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다음의 제안사항들을 고려하였음:

.1 Required 및 Attained 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Indicator) 수치 및 이의 등급(Rating)에 관한 정보의 추가보고를 비롯하여 이에 관련된 MARPOL Annex VI의 부록 9 개정; 및

.2 선박의 CII 수치 및 이의 등급에 관한 공공 접근성(Public accessibility).

- 고려 후,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MEPC 77 차는 ISWG-GHG 11차 회기에서 동 안건을 추가로 검토하고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차기 MEPC 78로 제시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음.

4. 선박기인 해양플라스틱 (Marine Plastic Litter from ships)

- MEPC 73차는 선박기인 활동을 통하여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을 방지하기 위한 Action Plan을 포함하는 결의서를 Res.MEPC.310(73)로 채택하였으며, 동 조치계획은 어선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의 감소, 해운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의 감소, 및 항만수용시설 및 해양플라스틱 감소의 처리과정에 대한 효율성 개선과 같은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음.

- 동 계획에 따라, IMO는 각 조치들의 필요성 평가, 새로운 조치들을 연간단위로 조치계획으로 통합 및 5년 후 조치들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 검토를 수행할 것임.

- 관련 논의를 지속할 목적으로, MEPC 77차는 해양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의 강화방안에 대한 다음의 제안사항들을 고려하였음:

.1 선박기인 해양플라스틱에 관련된 전략을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보고서;

.2 폐기물 기록부 비치 의무사항을 총톤수 100톤 이상의 모든 선박들에게 확장시키기 위한 MARPOL Annex V의 10.3 및 10.3.6규칙 개정 제안;

.3 선박에서 사용되는 방오도료 및 페인트로부터의 미세플라스틱 영향을 추가로 조사하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기 위한 필요성;

.4 유기, 유실 또는 이외의 폐기된 어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IMO 선박식별번호의 어구 마킹에 관한 새로운 강제요건의 도입 및 이의 법적 및 이행측면으로 제기된 우려; 및

.5 최근의 MV X-Press Pearl 선박의 사례를 고려, 플라스틱 펠릿(Pellet)을 운송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명확한 선적, 하역 및 명확한 라벨링을 위한 지침서 및 요건의 개발 필요성.

- 상기 논의 경과 및 제안사항들을 고려한 후, MEPC 77차는 다음의 사항에 동의하였음:

.1 다음의 주요 요소들을 지닌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을 다루기 위한 전략을 결의서 Res.MEPC.341(77)로 채택하였음:

- 어선으로부터 발생되거나 회수되는 해양플라스틱의 저감;

- 해운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의 저감; 및

- 해양플라스틱의 저감에 있어서 항만수용시설 및 이의 관리 측면의 효율성 개선

.2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들에 대한 폐기물 기록부 강제화 제안과 관련하여, 동 제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고려하여 MEPC 77차는 PPR 전문위원회로 MARPOL Annex V의 개정안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음.

.3 선박의 방오도로 및 페인트로부터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영향성에 대하여, MEPC 77차는 제시된 정보에 주목하였음.

.4 어구의 마킹과 관련하여, 현행 MARPOL Annex V하에 사용중인 어구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강제 어구마킹의 기술적 및 법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MEPC 77차는 PPR 전문위원회로 어구의 마킹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한 규정체계(강제 또는 권고)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음.

.5 플라스틱 펠릿에 관한 안건과 관련하여, MEPC 77차는 PPR 및 CCC 전문위원회로 추가 검토를 지시하여 동 건에 대한 최적의 논의방향을 조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5. 전문위원회 보고서

5.1 블랙 카본 (Black Carbon emissions)

- MEPC 77차는 국제해운으로부터의 블랙카본 배출에 따른 북극지역의 영향 감소를 위한 다음의 제안사항들을 고려하였음:

.1 블랙카본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기반 제어조치를 제공하는 비강제 지침서의 개발, 식별된 후보조치들과 함께 블랙카본의 배출을 통제 또는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법 및 정확하고 비교가능한 측정을 위하여 규격화된 샘플링과 측정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최신화된 작업사항의 제안;

.2 저유황 HFO 및 Aromatic 계열의 해상연료유 사용금지, 및 북극지역에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증류유(Distillate fuels)로의 연료전환 제안. 동 제안은 IMO 2020 Global 0.5%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Sulphur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개발된 다량의 아로마틱 계열의 연료유가 혼합된 저유황 잔사유가 블랙카본의 형성에 기여함에 근거하고 있음; 및

.3 반대 관점으로, 블랙카본의 형성은 기관의 설계 및 부하를 포함하는 다수의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평균의 초저유황유는 본질상 이를 대체하는 고유황 HFO 보다 파라핀 계열에 더 가까우며; MDO로의 전환은 이를 생산하기 위한 정제과정에서 연간 1700 만톤의 CO₂를 배출하므로 저유황 HFO의 사용금지 는 지지되어서는 안됨.

- 논의 중, MEPC 77차는 아로마틱 함량과 같은 연료 인자의 잠재적 영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초저유황유(VLSFO)를 사용한 추가의 블랙카본 측정 시험의 결과를 관심있는 국가 및 관련산업계로 요청하였고, ISO에게 특정 연료유가 아로마틱 계열 인지 파라핀 계열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된 ISO 8217의 최신화된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 및 MEPC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특히 주목 하였음.

- 논의 후, MEPC 77차는 상기 5.1.1항에 언급된 잔여 작업에 대한 업무를 연속하기 위한 작업사항 및 범위(Terms of Reference) 초안을 승인하였으며, 이의 완료 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함에 동의하였음.

- 장시간의 격렬한 정치적 및 기술적 논의 후, 비강제 권고사항으로, MEPC 77차는 다음의 주요사항으로 구성된 결의서를 Res.MEPC.342(77)로 채택하였음:

.1 블랙 카본은 기후변화에 대한 잠재적인 단명(short-lived) 원인이며, 4차 IMO GHG Study에 따라 증류유(distillate)로의 전환은 블랙 카본을 감소시킴을 인지하여; 및

.2 회원국 및 선박운항자들은 자발적으로 증류유, 기타 친환경 대체연료 또는 안전하고 블랙 카본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방법 등을 북극 또는 북극 인근지역에서 사용할 것을 촉구함.

5.2 MARPOL Annex II의 개정안 – GESAMP 위험성 평가절차

- MEPC 77차는 78차의 채택을 위하여 MARPOL Annex II의 부록1에 제시된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위한 지침서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이는 “GESAMP Reports and Studies No.102”의 완료에 따라 GESAMP 위험성 프로파일, 즉 Column C3의 하위 범주 및 Column E1의 재지정에 관한 2가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5.3 IBC Code Chapter 2 및 MARPOL Annex I의 28규칙 개정안

- MEPC 77차는 78차의 채택을 위하여 화물선의 수밀문에 관한 공통의 규정에 관련된 IBC Code의 Chapter 2 및 MARPOL Annex I의 28규칙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SOLAS 협약 및 MSC.1/Circ.1572/Rev.1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물선 수밀격벽의 수밀문 형식 (동력식 미닫이 문, 미닫이 문, 여닫이 문)은 항해 중 문의 사용 빈도(사용되는 문, 통상



Briefings of IMO Meeting

MEPC 77 (22 - 26 November 2021)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ef.: IMO-0013-2021

폐쇄되는 문,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문)에 따라 그 형식이 결정되지만 유탱커에 대한 MARPOL Annex I의 28.3.1규칙 및 케미칼 탱커에 대한 IBC Code의 2.9.2규칙은 사용되는 문으로서 동력식 미닫이 문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SOLAS 협약 요건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에 추가하여 현존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고려하여 모든 선박(신조 및 현존)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6. 신규 작업 계획

- 6.1 MEPC 77차는 소각기 및 폐기물 저장공간에 대한 방화요건을 제공하는 지침서의 부속서 2에 언급된 요건들을 검토함으로써, Res.MEPC.244(66)과 SOLAS Chapter II-2간으로 식별된 불일치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2014 선내 소각기에 대한 승인기준(Res.MEPC.244(66))의 개정안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작업계획을 승인하였음. 이는 SOLAS 규정이 고정식 소화장치를 요구하는 반면 Res.MEPC.244(66)은 자동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 근거함.
- 6.2 MEPC 77차는 보일러를 대체하는 선박용 디젤기관의 설치가 교체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MARPOL Annex VI의 13.2.2규칙 및 이에 따른 "2013 Guidelines as required by 13.2.2 of MARPOL Annex VI in respect of non-identical replacement engines not required to meet the Tier III limit (Res.MEPC.230(65))" 지침서의 개정을 위한 신규작업계획을 승인하였음. -끝-

협약업무팀장

P.I.C:

Kim Hoi-Jun / Principal surveyor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82 70 8799 8330
Fax: +82 70 8799 8319
E-mail: convention@krs.co.kr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